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12

제 출 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 건축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내부배관에서 보조계량의 형태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배관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6조, 제6조의3)
- 급수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4조의2)
- 상수도사용료 체납의 권리의무 승계규정(안 제25조의3)
-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용량의 규정을 기존 3가지(15㎥, 10㎥, 10㎥ 이하)의 경우에서 한가지 규정(15㎥범위 안)으로 통일(안 제32조5항제2,3호)
- 요금납부 “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을 “25일”로 조정(안 제34조)
- 수도요금을 납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준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37조)
- 수도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도로 변경하고, 납부대상도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는 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를 포함(안 제39조)

- 요금의 감면제도를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는 “평균사용량이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던 것”을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1을 감량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46조)
- 수도계량기 위탁의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함(현행 : 법인 → 개정 : 개인, 법인, 공사, 공단) (안 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법,

◎ 지방자치법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 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元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분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수도법

第23條 (供給規程)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수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1條 (料金등의 强制徵收) ①수돗물의 供給을 받은 者가 수돗물의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壞者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1994.8.3>

②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區域외의 地域에 수돗물을 供給한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徵收를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4.8.3>

③水道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徵收를 위임 또는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그 徵收한 금액의 100分の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3條 (原因者負擔金)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算定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 (損壞者負擔金) ①水道事業者는 水道施設을 損壞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者が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水道施設의 修繕·유지에 관한 費用이나 損壞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해당 事業者 또는 行爲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第5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를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 분리 등의”로 한다.

제4조중 “각호의 4종”을 “각호의 5종”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제5조중 “각호의 4종”을 “각호의 5종”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2개 업종만 분리가능) 이 조례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전용급수장치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옥내 배관시설(물탱크 및 저수조시설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급수 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경우 옥내 배관시설이 상호 혼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수도전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승인한다.

제13조제1항중 “등을 합산한다”를 “ 분담금,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개조”를 “개조, 수전분리”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구경확대 공사를”을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 공사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급수장치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급수장치의 소유권) ①급수장치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장치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제25조제2항 중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자는 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

약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항중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사용할 경우 검업종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검업종 가구분할의 인정은 제 32조제5항의 각호와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제33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납부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를 “납부마감일은 25일로 하여 징수하며”로 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정액요금 부과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7조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을 “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종료 후 상·하수도요금을 정산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별표5”중 3호의 “설계금액의 100분의2”를 “공사비설계금액의 100분의2”로 하고 5호 다음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신청수수료 건당 5,000원

제41조 제목중 “요금 등의 감면”을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 또는 지원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으로서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 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중 “수도계량기”를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 및 봉인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1항중 “ 법인에게”를 “개인·법인·공사·공단에게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6조의2의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34조의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④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3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 7. (생략)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 4. (생략)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5.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5.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5.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 4. (생략)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동일 건물내 가정용과 기타 업종간 수도전을 분리할 수 있으며, 급수전분리 공사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케 하여 승인한다.	⑥ 시장은 동일 건물내 가정용과 기타 업종간 수도전을 분리할 수 있으며, 급수전분리 공사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케 하여 승인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신 설]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2개 업종만 분리가능)	
[신 설]		3.	조례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의2 (전용급수장치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옥내 배관시설(물탱크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옥내 배관시설이 상호혼용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 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수도전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승인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등을 합산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 (시설 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규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 ----- - 분담금,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시설 분담금) ① ----- ----- 개조, 수전분리(-----)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구경확대 및 수전분리 공사를 ----- -----. ⑤ 급수장치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4조의2 (급수장치의 소유권) ①급수장치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장치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자는 건물 또는 토지 매매계약 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③ (생략) [신 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 (업종의 구분)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1개의 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겸업종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겸업종 가구분할의 인정은 제32조제5항의 각호와 같다.		제30조 (업종의 구분) ②----- ----- -----, -----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사용량의 인정) ① ~ ④ (생략)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업종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제32조 (사용량의 인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급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당 월 15세제급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1. 월 사용량이 영업용 또는 업무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사용량을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⑥ (생략) 제3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u>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u>에 규정된 허용 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생략)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u>계량에관한법률</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 --, 납부 마감일은 25일로 하여 징수하며,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현행	개정안
④공동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 기타 변상금, 과태료등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일시급수 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후 공사비 납부시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 및 철거 공사비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요금의 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급수 종료후 상·하수도요금 및 철거공사비를 정산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신 설] 제40조 (제수수료) 시장은 【별표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④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정액요금 부과·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가산금) ----- ----- ----- -----100분의 3----- -----, ----- ----- -----. 제39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납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종료후 상·하수도요금을 정산한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 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제수수료) ---- 【별표 5】----- ----- -----. 제41조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① ----- ----- ----- 감면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감면금액 등 감면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으로서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정수처분) ① (생략) 1 ~ 3. (생략) 4. <u>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자</u> 5 ~ 12. (생략) ② (생략)	제44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u>----- ----- 5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u>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u>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u>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 및 봉인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탈·부착비를 합한 금액으로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누수량의 변상액은 영업용의 최고요율과 누수추정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현행	개정안
제5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 등을 <u>법인에게</u>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① ----- ----- ----- -----<u>개인·법인·공사·공단에게</u> ----- -----. ② ~ ⑤ (현행과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5] (조례 제40조 관련) 제수수수료	[별표 5] (조례 제40조 관련) 제수수수료
1.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의 2%로 하되, 15,000원 이상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15,000원 3. 제13조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u>설계금액의 100분의 2</u> 4. 제33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4,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1,000원 단, 수도미터기 시험수수료가 변동될 시에는 시험 실시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0원 급수관구경 50m/m이상 50,000원 6. (신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u>공사비설계금액의 100분의 2</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신청 수수료 건당 5,000 원

[별표1]

시 설 분 담 금			
계 량 기 구 경 별	분담금액		비 고
	동 지역	읍 · 면	
13mm	100,000	80,000	- 개 조 시 에 는 신 . 구 구 경 별 분 담 금 차 액 을 징 수 한 다
20mm	250,000	150,000	
25mm	400,000	200,000	
32mm	800,000	500,000	
40mm	1,400,000	1,000,000	
50mm	2,400,000	1,800,000	
80mm	5,500,000	4,000,000	
100mm	10,000,000	7,000,000	
150mm	20,000,000	15,000,000	
200mm	30,000,000	20,000,000	
250mm	40,000,000	30,000,000	
300mm [○] 상	40,000,000×단 면적배율(천원이하 절사)	30,000,000×단 면적배율(천원이하 절사)	
			※ 공업단지 지역은 동 지역 적용